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계약 체결 시 충분한 이행기간 산정 근거 마련〉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20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계약 체결 시 충분한 이행기간 산정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14.
3. 회 부 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계약 체결 시 충분한 이행기간 산정 근거 마련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4조의2(계약의 이행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행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 체결 시 이행기간, 지연배상금 등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그런데, 「지방계약법」이 계약의 이행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계약 이행 과정에서 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³⁾.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체결 시 공휴일, 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계약 이행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참고하면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 계약 이행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3) 특히,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의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심사 등 절차 진행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을 중지·재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 체결 시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 체계와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때, 현행 「지방계약법」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 간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계약 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함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4)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충분한 이행기간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022호)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의안의 심사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 동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⁵⁾, 「행정기본법」 및 「민법」은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하는 경우 기간의 초입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등 기간 계산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⁶⁾.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계약 이행기간 산정은 개별 계약의 특성 및

5)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6)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일로 만료한다.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할 사항으로 계약 문서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충분한 이행기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계약 내용이나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 기간이 설정되어 계약 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전가되어 계약 이행의 부담이 가중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공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공사인 ‘돌관공사’가 불가피하여 근로자 안전 및 시설물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모호한 기준으로 공사기간 산정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계약이행기간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적정대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이행

기간만 늘어나는 경우 공공행정 지연책임이 민간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 계약금액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행기간만 늘어나는 경우 투입비용 증가로 실질적 설계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인력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